

예고번호 2024-003

「중부대학교 학칙」 제54조(학칙 개정 절차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을 공고합니다.

대학원학칙 일부개정규정안

대학원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하기 및 동기방학 중에 필요에” 을(를) “필요에” 로(으로), “집중학기를” 을(를) “집중학기, 유연학기를” 로(으로)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타” 을(를) “전적” 로(으로), “대학원에서” 을(를) “대학원” 로(으로), “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거쳐 석사 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” 을(를) “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.” 로(으로)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대학원학칙]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5조(학년도·학기) ①~② (생 략)	제15조(학년도·학기) ①~② (현행과 같음)	
③ <u>학기 및 동기방학 중에 필요</u> <u>에 따라 계절학기, 집중학기</u> <u>를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운</u> <u>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</u> <u>로 정한다.</u>	③ - - - - - - -, <u>유연학기</u>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.	
제22조(학점인정 및 학점교환)	제22조(학점인정 및 학점교환)	
① <u>국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</u> <u>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</u> <u>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</u> <u>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</u> <u>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</u> <u>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</u> <u>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</u> <u>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거쳐</u> <u>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,</u> <u>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</u> <u>인정할 수 있다.</u>	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전적</u> - - - - - <u>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인</u> <u>정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</u> <u>학칙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</u> <u>한-</u> .	
②~④ (생 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	